◎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정 2021. 6. 8.
개정 2022. 8. 17.
개정 2024. 12. 18.

제 1 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경북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6조(관리단체지정)의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해당 가맹단체에 즉시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기타 주요사항

제 4 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받은 당해 가맹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당해 가맹단체의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이하 "관리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가맹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해 가맹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가맹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가맹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④ 관리단체 지정 후 1년 이내에 가맹단체로서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탈퇴케 한다.. 단, 위원회가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하여 관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8.〉

제 5 조(관리단체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 관계자는 관리단체로서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및 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관리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

④ 관리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 가맹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가맹단체규약(정관)에 규정된 사업 및 가맹단체와 관련된 제반사항
6. 가맹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제 8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9 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